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법인 장사시설의 소유권 변경 인정 등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46호)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4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검토의견 .....     | 4  |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4  |
| 2. 주요 검토 사항 .....   | 11 |



## I. 개요

### 1.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46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관리 및 폐지의 요건·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조성·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 2.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949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9.

(3) 회 부 일 : 2026. 1. 1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게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 II.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37조의2 신설 등)

□ 2건의 개정안은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sup>1)</sup>(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소유권 변경을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용대상 장사시설의 범위, 소유권 변경 절차, 소유권 변경에 따른 지위·승계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안호영의원안(제13746호): 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소유권 변동 사실을 관할 시장등<sup>2)</sup>에게 보고하고, 시신·유골의 연고자 등에게 알리며, 유골 이전 등에 대하여 연고자 등과 신속히 협의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등).
- 안호영의원안(제15949호): 영업의 양도나 법인 합병, 경매 등에 따라 장사시설의 시설·설비 등을 인수한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을 시장등에게 신고하며, 종전의 설치·관리자와 사용자가 맺은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승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 < 각각의 개정안 비교 >

1)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함(「장사법」 제2조제15호)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장사법」 제8조제1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 안호영의원안(제13746호)                          | 안호영의원안(제15949호)                                                                |
|-----|----------------|------------------------------------------|--------------------------------------------------------------------------------|
| 공통점 |                | · 법인 장사시설의 매매·경매 등으로 인한 <u>소유권 변경 인정</u> |                                                                                |
| 차이점 | 적용대상 장사시설      | · 법인묘지, <u>법인 봉안시설, 법인등자연장지</u>          | · <u>법인 봉안시설, 법인등자연장지</u>                                                      |
|     | 소유권 변경 절차      | · 소유권 변동 후 <u>시장등에 대한 보고 및 유족에 대한 통지</u> | · 소유권 변동(경매 등에 따른 변동 포함) 후 <u>설치·관리자의 지위 승계, 시장 등에 대한 신고</u> 및 승계 사실 <u>게시</u> |
|     | 안치 유골 등에 대한 대책 | · <u>유골 이전 등에 대하여 연고자 등과 신속히 협의</u>      | · 종전의 설치·관리자와 시설 사용자와 맺은 <u>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u>                                |

< 각각의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 행   | 안호영의원안(제13746호)                                                                                                                                                                               | 안호영의원안(제15949호)                                                                                                                                                                           |
|-------|-----------------------------------------------------------------------------------------------------------------------------------------------------------------------------------------------|-------------------------------------------------------------------------------------------------------------------------------------------------------------------------------------------|
| <신 설> | 제37조의2(소유권 변동 보고 등) ① 제14조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제16조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서 설치·관리하는 사설봉안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설봉안시설등”이라 한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하 이 조에서 “소유권 변동”이라 한다)되는 경우 사설 | 제26조의2(사설장사시설 설치·관리자 지위의 승계 등) ①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설봉안시설 설치·관리자와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관리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

불안시설등의 설치자  
· 조성자 또는 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설  
치자등”이라 한다)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즉시 시장등에게 보고  
하고 제26조제3항제2  
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하 이 조  
에서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장등은 설치자  
등에게 소유권 변동으  
로 인한 유골 관리계  
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른 유골 관  
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소유권 변동이 있  
는 경우 설치자등은  
유골 이전 등에 대하

설치·관리자의 지위  
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  
에 따라 사설장사시설  
의 시설·설비의 전부  
를 인수한 자는 그 설  
치·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설장사시  
설 설치·관리자의 지  
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

여 연고자등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봉안시설의 출입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연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점검, 안내·공고 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라 한다)는 종전의 설치·관리자와 사설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양수인등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 사실, 양수인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이 제5항에  
서 정한 기간 안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  
지 아니하면 그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  
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본  
다.

⑦ 양수인등은 지위  
승계 과정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또  
는 반환 기준 등 계약  
내용을 사용자에게 불  
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양수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및 관리비

|                                                                                                          |                                                                                         |                                                                                                                                                                                                                                |
|----------------------------------------------------------------------------------------------------------|-----------------------------------------------------------------------------------------|--------------------------------------------------------------------------------------------------------------------------------------------------------------------------------------------------------------------------------|
|                                                                                                          |                                                                                         | <u>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u><br><u>2. 사용자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발급 절차를 마련할 것</u><br><u>3. 10명 이상의 사용자</u><br><u>자로 구성된 대표기구</u><br><u>가 있는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 등</u><br><u>계약내용에 관하여 그 대표기구와 성실</u><br><u>하게 협의할 것</u> |
| 제42조(과태료) ①                                                                                              | 제42조(과태료) ① ----                                                                        | 제42조(과태료)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 -----<br>-----<br>-----<br>-----<br>-----,<br>-----<br>-----<br>-----<br>-----<br>----- | -----<br>-----<br>-----<br>-----<br>-----,<br>-----<br>-----<br>-----<br>-----<br>-----                                                                                                                                        |



## 2. 주요 검토 사항

- 2024년 말 기준, 총 155,199개의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법인등(종교단체 포함) 소유의 장사시설은 묘지 171개소, 봉안시설 425개소, 자연장지 132개소 등 총 728개소임.

### < 시설별·소유별 장사시설 현황(2024.12.31. 기준) >

(단위: 개소)

| 구분   | 공설            | 사설          | 법인등                         |               |               | 개인등 <sup>1)</sup>  | 합 계     |
|------|---------------|-------------|-----------------------------|---------------|---------------|--------------------|---------|
|      |               |             |                             | 법인            | 종교단체          |                    |         |
| 화장시설 | 61            | 1           | —                           | —             | —             | —                  | 62      |
| 묘지   | 328           | —           | <b>171</b>                  | 171           | —             | 140,611            | 141,110 |
| 봉안시설 | 200           | —           | <b>425</b>                  | 144           | 281           | 5,577              | 6,202   |
| 자연장지 | 79            | —           | <b>132</b>                  | 26            | 106           | 7,614              | 7,825   |
| 계    | 668<br>(0.4%) | 1<br>(0.0%) | <b>728</b><br><b>(0.4%)</b> | 341<br>(0.2%) | 387<br>(0.2%) | 153,802<br>(99.1%) | 155,199 |

주1: '개인등'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시설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현행법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장사시설 관리 체계를 보면, 법인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설묘지 및 자연장지는 각각 시장등의 허가를, 사설 봉안시설의 설치에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할 토지와 건물은 법인 소유여야 함.

### < 법인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 관련 규정 >

| 법인묘지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증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3. 법인묘지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2. 사설봉안당

나. 법인봉안당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 법인봉안묘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또한, 장사시설의 변경 시에도 앞에서 언급한 장사시설 설치 시의 절차를 따르게 되고, 변경 허가·신고 대상은 시설의 면적,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등에 한정되어, 건물·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 변경은 현행법령 상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법인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대한 변경 허가·신고 사항 >**

| 법인묘지                                                                                                                                                                                                                                                                                                                                                                                                                                                                                             |
|--------------------------------------------------------------------------------------------------------------------------------------------------------------------------------------------------------------------------------------------------------------------------------------------------------------------------------------------------------------------------------------------------------------------------------------------------------------------------------------------------|
|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u>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u>법인묘지의 면적</u>에 관한 사항</li> <li>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만 해당한다)</li> <li>3. 종중·문중묘지 또는 <u>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u>에 관한 사항</li> </ol> |
| 법인봉안시설                                                                                                                                                                                                                                                                                                                                                                                                                                                                                           |
|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u>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u>에 관한 사항</li> <li>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li> </ol>         |
| 법인자연장지                                                                                                                                                                                                                                                                                                                                                                                                                                                                                           |
|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④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u>에 관한 사항</li> <li>2. <u>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u>에 관한 사항</li> <li>3. <u>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u>에 관한 사항</li> </ol>                                                                                                  |

□ 이에 따라, 법인이 장사시설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6조에 따라 폐지 신고를 한 후에, 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설치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임.

- 장사시설 폐지 시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장 시신·유골의 연고자 등에게 폐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사후처리 및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 법인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자연장지 소유권 변동 시 폐지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 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 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 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 1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설별·소유별 장사시설 폐지 현황(2020~2024)>

(단위: 개소)

| 구 분  |      | 화장시설 | 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계        |
|------|------|------|----|----------|----------|----------|
| 2020 | 계    | -    | 25 | 2        | 4        | 31       |
|      | 공설   | -    | -  | -        | -        | -        |
|      | 법인   | -    | -  | <b>1</b> | -        | <b>1</b> |
|      | 종교단체 | -    | -  | -        | -        | -        |
|      | 개인등  | -    | 25 | 1        | 4        | 30       |
| 2021 | 계    | -    | 4  | -        | 14       | 18       |
|      | 공설   | -    | 1  | -        | -        | 1        |
|      | 법인   | -    | -  | -        | <b>1</b> | <b>1</b> |
|      | 종교단체 | -    | -  | -        | 1        | 1        |
|      | 개인등  | -    | 3  | -        | 12       | 15       |
| 2022 | 계    | -    | 8  | 4        | 8        | 20       |
|      | 공설   | -    | -  | -        | 1        | 1        |
|      | 법인   | -    | -  | <b>1</b> | -        | <b>1</b> |
|      | 종교단체 | -    | -  | 2        | -        | 2        |
|      | 개인등  | -    | 8  | 1        | 7        | 16       |
| 2023 | 계    | -    | 10 | 4        | 6        | 20       |
|      | 공설   | -    | 1  | -        | -        | 1        |
|      | 법인   | -    | -  | -        | -        | -        |
|      | 종교단체 | -    | 1  | 4        | -        | 5        |
|      | 개인등  | -    | 8  | -        | 6        | 14       |
| 2024 | 계    | -    | 10 | 5        | 18       | 33       |
|      | 공설   | -    | -  | -        | -        | -        |
|      | 법인   | -    | -  | <b>1</b> | <b>1</b> | <b>2</b> |
|      | 종교단체 | -    | -  | 1        | -        | 1        |
|      | 개인등  | -    | 10 | 3        | 17       | 30       |

\* '개인등'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시설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 이처럼 장사시설 폐지 전에 매매 등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는 장사시설의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을 통한 유골의 안정적 보호·관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에 따른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장사시설 폐지 이전이라도 매매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유족 등 사용자 보호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규율 체계, 장사시설의 운영 현황, 설치·변경 절차, 장사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유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에 따른 연고자 보호를 더 어렵게 만드는 등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장사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96 |